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산업안전보건법위반

[서울남부지방법원 2014. 7. 3. 2013고단2610]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엄재상(기소), 천재인(공판)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(유한) 로고스 담당변호사 임수식 외 1인

【주문】

1

피고인 1을 징역 1년,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5,000,000원에 각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【이유】

]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